

제 안 설 명 서

[영주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영 주 시

영주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169

제출일자 : 2000. //

제출자 : 영 주 시 장

1. 폐지이유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95.12.29. 법률 제5077호)되고 농어촌정비법이 제정('94.12.22. 법률 제4823호)됨에 따라 농지개량사업 참가 자격자에게 부과하던 금전 또는 부역 현품 부과 징수 조항이 없어지고, 농지개량계조직에 대해서는 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영주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를 폐지함

3. 폐지조례(안) : 덧붙임

4. 참고자료 : 덧붙임

- 관련법령(발췌) 1부

영주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영주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발췌)

【농촌근대화촉진법】 - 폐지(1995. 12. 29. 법률 제 5077호)

제5조(농지개량사업에의 참가자격) ①농지개량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농지개량사업의 시행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로 한다.

1.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토지에 소유권 이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는 같다)을 가지고 있는 자
3.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나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토지에 소유권 이외의 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농지개량사업에의 참여자격자로 인정한 자

②<생략>

제7조(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 농지개량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농업진흥공사·농지개량조합 또는 토지소유자가 시행한다.

제100조(부담금) ①농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자가 조합 또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39조 내지 46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사업 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농지개량조합법】 - 폐지(1999.2.5. 법률 제5759호)

부 칙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농촌근대화촉진법 및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종전의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에 대한 국고보조에 관한 규정은 그 장기채의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의 안

- 의안번호 : 제169호
- 의 안 명 : 영주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 해당부서 : 산업건설국 건설과

2. 제안이유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95.12.29. 법률 제5077호)되고 농어촌정비법이 제정('94.12.22. 법률 제4823호)됨에 따라 농지개량사업 참가 자격자에게 부과하던 금전 또는 부역 현품 부과 징수 조항이 없어지고, 농지개량계 조직에 대해서는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를 폐지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영주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를 폐지함.

4. 검토의견

본 폐지조례(안)을 검토한 바

- 현행조례는 당초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거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경비부과 등(제2조)과 농지개량계 조직·운영(제3조)을 규정하였으나 동법이 폐지('95.12.29)되어,
- 제2조의 규정은 삭제되고 제3조의 내용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에 의해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2000. 12.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호 섭